

평생교육원운영규정

제 정	1999. 9.
개 정	2004. 9.
개 정	2007. 9.
개 정	2019. 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원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부설 평생교육원 (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9.08.22>

제2조 (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대학에 둔다.<개정 2019.08.22>

제2장 조 직

제4조 (원장) ①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겸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8.22>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교직원)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 업무를 관장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구성) ①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9.08.22>

제7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8.22>

제8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8.22>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08.22.>

제4장 설치과정

제10조 (학습과정) 본원에는 평생교육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일반과정, 학점은행제, 생활교양과정, 자격

과정, 외부사업(위탁)과정, 특화사업과정 등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제11조 (학습기간 및 일수) 본원의 각 과정별 학습기간 및 일수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9.08.22>

제12조 (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제13조 (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과정 등) ①<삭제 2019.08.22>

②<삭제 2019.08.22>

제14조의2 (과정운영 등) ①각 과정의 모집시기 및 학습인원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8.22>

②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8.22>

③각 과정의 교·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8.22>

제15조 (학습비) ①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8.22>

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9.08.22>

제15조의2 (학습비 감면) ①원장은 각 과정 수강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습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중복 혜택은 줄 수 없다. <신설 2019.08.22>

1. 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2. 본 대학 교직원 및 교직원의 직계가족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대상자

②학점은행제 수강자에 대한 감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8.22>

③학습비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08.22>

1. 본 대학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2. 본 대학 재직증명서 및 교직원과의 가족관계증명서
3. 추천서 (별지 2)
4. 기타 증빙서류

제16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1)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08.22>

제16조의 2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학습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은 (별지 3)의 서식과 같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08.22>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7조 (자치회) ①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8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삭제 2018.08.22>

제19조 (상별) ①원장은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08.22>

②원장은 학습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근신, 정학, 제적 등 징계를 할 수 있다.<신설 2018.08.22>

제6장 회 계

제20조 (회계년도) 본원 회계년도는 본 대학 회계년도에 따른다.<개정 2018.08.22>

제21조 (예산편성) ①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2>

②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신설 2018.08.22>

③원장은 회계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08.22>

제22조 (수입원)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08.22>

1. 학습비
2. 본 대학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23조 (회계업무)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대학 재무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관장한다.<개정 2018.08.22>

제7장 보 칙

제24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9.08.22>

제25조 (준용)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08.2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 ○ ○ - ○ ○ ○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과정 (○학점)
○○○과정 (○학점) 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우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우송대학교 총장

[별표 1]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 개 월 을 초 과 하 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